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11. 25
- 다. 상 정 일 자 : 96. 12. 23(제50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기획실장 정 부 응

나. 제안사유

-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군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거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필요한 조례제정

다.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공개횟수(안 제2조)

- 매년 2회 : 매년 3월과 하반기 1회

○ 공개대상(안 제3조)

<상반기>

-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상황
-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등

<하반기>

- 전년도 결산 개황
-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등

○ 주민공개제한(안 제5조)

- 확정되지 않거나 추진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재휴)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부. 끝.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군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거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

2. 주요내용

가. 주민공개회수 (안 제2조)

○ 매년 3월과 하반기에 공개.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시기 별도 지정

나. 주민 공개대상 (안 제3조)

(1) 3월

-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및 주요사업조서
-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계획과 기금운용 계획등
-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등

(2) 하반기

-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현황,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용상황
-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등

다. 공개방법 (안 제4조)

-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지정

라.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안 제6조)

-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인계인수시 20일이내 인수 받은 사항공개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의 재정운영 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 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3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